

의안번호	2214895
의 퇴 인	김병기 의원
회 답 일	2026. 1. 5.
추 계 번호	25C6692
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9조의2 (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)	국가는 사회유공자가 구조행위 등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의사자 또는 의사자유족에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함	의무규정
2	안 제24조 (보조금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유공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※ (안 제20조) 사회유공자, 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유공자 등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유공자회를 둠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조의2 (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4조 (보조금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의사상자의 구조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발생 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

하도록 규정

－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없음

□ 또한, 향후 개정안에 따라 한국사회유공자회가 설립되고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해당 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경우에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현재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,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,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, 광복회, 4·19민주혁명회, 4·19혁명희생자유족회, 4·19혁명공로자회,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이 설립됨

○ 현행법상 의사상자(개정안에 따른 ‘사회유공자’) 관련 단체 설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황

□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국가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보상금 및 한국사회유공자회에 대한 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○ 현 시점에서는 향후 구조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－ 안 제9조의2제5항은 보상금의 지급범위, 지급절차,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급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

○ 또한, 현 시점에서는 향후 한국사회유공자회 설립 여부 및 시점, 해당 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금의 규모 등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
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